

참고

주요 개정 사항(신구대비표)

항목	'25년	'26년
지원내용 및 예산 p 3, 18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품목 ○ 예산 ○ 지원단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상품목 : 수급조절용벼, 알팔파, 수수, 울무 추가 ○ 예산 : 4,196억원 ○ 지원단가 : 옥수수개 100→150원/m², 하계조사료 500→550 * (동계) 밀·조사료 + (하계) 두류·가루쌀·조사료(알팔파) 이모작 시 100원/m² 추가 지급
지급대상 농지 p 7, 9	<u>“추가”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지급대상 농지는 다음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농지 중, “논” 이어야 함 (「농업농촌공익직불법」 시행령 제43조 제1항) * 지급대상 농지확인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통해 논 여부 확인 필요 ① 종전의 「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」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농지 * 쌀고정직불금 또는 밭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②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농지로서 법 제12조 제1호에 따라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농지
	<u>“신설”</u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간척지 중 새만금지구와 같이 논 이외의 이용 목적으로 조성된 경우에는 대상농지가 아님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⑨ 지급대상 농지(필지기준) 중 “농지의 형상”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(폐경*)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* 묘지, 폐기물·모래·자갈적치, 콘크리트 등 타설, 골재채취장·양어장, 건축물부지·주차장, 정원(조경수, 관상수 등 식재), 공사장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⑨ 지급대상 농지(필지 기준) 중 “농지의 형상”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(폐경, <u>생산·개량·부속시설</u>*)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 * 묘지, 폐기물·모래·자갈적치, 콘크리트 등 타설, 골재채취장·양어장, 건축물부지·주차장, 정원(조경수, 관상수 등 식재), 공사장 등 ** <u>생산·개량·부속시설</u>: 유지(웅덩이), 양·배수시설, 수로, 포장농로, 제방, 고정식시설 등

항목	'25년	'26년
	<p>⑫ 과수원, 다년생작물재배농지, 온실·비가림시설과 같은 고정식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제외하되, 단동 비닐하우스와 같이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온실이 설치된 농지는 비닐 및 파이프 제거를 조건으로 인정 가능</p>	<p>⑫ 과수원, 다년생작물재배농지* 온실·비가림시설과 같은 고정식시설이 설치된 농지는 제외하되, 단동 비닐하우스와 같이 철거가 가능한 이동식 온실이 설치된 농지는 비닐 및 파이프 제거를 조건으로 인정 가능</p> <p>* 전략작물직불 대상작물(알팔파)을 재배하는 농지는 지급대상임</p>
<p>지급대상 농업인 p 12</p>	<p>○ 작기별로 논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동계작물은 10~6월, 하계작물은 5~11월 사이의 기간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경우 지급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신설”</p>	<p>○ 작기별로 논 1천㎡ 이상(폐경 및 휴경 제외)에서 동계작물은 10~6월, 하계 작물은 5~11월 사이의 기간에 파종부터 수확까지 정상적으로 관리한 경우 지급</p> <p>- 다만, 알팔파(다년생작물)는 해당 작기(동계,하계)에 파종하지 않은 경우도 대상이 됨</p>
<p>지급대상 품목 p 16</p>	<p>○ (동계) 논(밭)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(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)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</p> <p>④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</p> <p>△ 두류 : 콩, 팥, 녹두, 완두, 강낭콩, 동부, 잠두, 칼콩, 제비콩, 병아리콩, 렌틸콩, 기타 두류(5~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,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“신설”</p>	<p>○ (동계) 논(밭)에서 재배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(휴경면적 및 고정시설면적 제외)로 6월말 이전까지 수확이 가능하여 논이모작을 할 수 있는 품목</p> <p>④ 두류는 농축수산물 표준분류코드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두류에 해당하는 품목</p> <p>△ 두류 : 콩*, 팥, 녹두, 완두, 강낭콩, 동부, 잠두, 칼콩, 제비콩, 병아리콩, 렌틸콩, 기타 두류(5~11월 기간에 재배하는 경우로, 전후작으로 벼를 재배할 수 없음)</p> <p>* 콩 세부품목: 청태, 흑태, 선비태, 아주까리콩, 서리태, 밤콩, 콩나물콩, 풋콩, 풋청태, 갓끈콩, 양태, 울콩, 발아콩, 백태, 호랑이콩, 알록콩, 서목태</p> <p>△ (지급제한) '백태·콩나물콩' 은 전년도 전략작물직불을 이행한 경우(직불 신청 단위인 개인 또는 법안)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, 신청 단위별 최대 신청 가능 면적은 전년도 백태, 콩나물콩 직불 이행 면적으로 제한****함</p>

항목	'25년	'26년
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인정 기준>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fit-content;"> <p>※ 아래 내용은 농업e지 내 '지급품목면적' - '품목 상세' 입력값을 기준으로 함(하단 그림 참고)</p> </div> <p>① 백태 또는 콩나물 콩: 신청 가능</p> <p>② 기타(직접 입력): 백태 또는 콩나물콩(품종명 포함) 등으로 등록된 경우 신청 가능</p> <p>③ 기타(직접 입력): 백태 또는 콩나물 재배 여부의 전산 확인이 곤란하나, 백태콩나물 콩 재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 가능</p> <p>* (증빙서류) ①정부 수매 매입증명서(백태·콩나물 콩) ②계약재배 확인서 ③보급종 종자 구매 확인서 등을 통해 백태·콩나물 콩 재배 증빙이 가능한 경우만 인정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margin: 10px auto; width: fit-content;"> <p>※ '25년 기타(직접입력)으로 등록된 농가가 증빙서류 제출 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신청 확인 면적 입력</p> <p>① 정부 수매 매입증명서 제출 시: 매입증명서에 기재된 수량에서 면적 산출입력(기준 단위: 200kg/ha)</p> <p>- 예: 매입증명서에 기재된 수량 1,000kg인 경우 5ha</p> <p>② 계약재배 확인서 제출 시: 계약재배 확인서의 면적 입력</p> <p>③ 종자 구매 확인서 제출 시: 구매 확인서에 기재된 종자량에서 면적 산출입력(기준 파종량 50kg/ha)</p> <p>- 예: 구매 확인서에 기재된 종자 구매량 100kg인 경우 2ha</p> </div> <p>* 신청인은 직불지침개편안 동의서(별지 제1호, 1-2호, 제2호 서식 첨부물)를 제출하고, 접수 담당자는 백태· 콩나물콩 접수증(별지 제4-1호 서식) 내 '지급 가능 최대 면적'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접수증 교부</p> <p>※ (확인 방법) 농업e지 → 전락작물작물 → 신청선정관리 → 신청서 관리 → 신청상세조회 → 신청정보(신청농지정보) → 지급품목면적 품목상세 내 입력값이 두류기타류(직접입력)인 경우 백태콩나물 콩(품종 포함) 여부 확인</p>

항목	'25년	'26년																	
		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400 287 2027 614"> <thead> <tr> <th>구분 (예시)</th> <th>백태콩나물콩 재배 확인 가능 (증빙 서류 불요)</th> <th>백태콩나물콩 재배 확인 곤란 (증빙 서류 제출)</th> <th>백태콩나물 콩 외 (신청 불가)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기타 (직접입력) 입력 값</td> <td>논콩-백태 / 나물콩 / 대황2호 / 대일 / 대산 / 매주콩(선종) / 장풍 / 선유2호 / 콩나물 콩 / 콩(원콩) / 대광 / 풍산 / 백태콩 / 매주콩 등</td> <td>중자용 / 논콩 / 콩 / 검은콩 / 매주콩 / 기타두류 / 두류 / 콩 / 두부 / 매주콩 등 / 백태(?) / 콩, 팥 / 콩, 참깨 / 선콩 / 일반콩 / 조건부 적합, 새바람 등</td> <td>검은콩 / 서리태 / 서목태 / 면태 / 밤콩 / 물콩 / 청자 5호 / 세움콩 / 선비콩 / 세움콩 / 약콩 / 울티라콩 / 울콩 / 소청자 / 작두콩 / 쥐눈이콩 / 청태 / 팥 / 호랑이콩 / 하얀미리 등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div data-bbox="1512 630 2004 869"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padding: 5px;"> <p>총지급면적: 6,185.00 m² 부직격면적 0.00 m²</p>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품목구분</th> <th>품목상세</th> <th>면적(m²)</th> <th>비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* 지급품목면적</td> <td>두류</td> <td>두류-기타두류(직접입력)</td> <td>서리태</td> <td>6,185.00 m²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처리상태 정상 <input type="text" value=""/> 비고: <input type="text" value=""/></p> </div>	구분 (예시)	백태콩나물콩 재배 확인 가능 (증빙 서류 불요)	백태콩나물콩 재배 확인 곤란 (증빙 서류 제출)	백태콩나물 콩 외 (신청 불가)	기타 (직접입력) 입력 값	논콩-백태 / 나물콩 / 대황2호 / 대일 / 대산 / 매주콩(선종) / 장풍 / 선유2호 / 콩나물 콩 / 콩(원콩) / 대광 / 풍산 / 백태콩 / 매주콩 등	중자용 / 논콩 / 콩 / 검은콩 / 매주콩 / 기타두류 / 두류 / 콩 / 두부 / 매주콩 등 / 백태(?) / 콩, 팥 / 콩, 참깨 / 선콩 / 일반콩 / 조건부 적합, 새바람 등	검은콩 / 서리태 / 서목태 / 면태 / 밤콩 / 물콩 / 청자 5호 / 세움콩 / 선비콩 / 세움콩 / 약콩 / 울티라콩 / 울콩 / 소청자 / 작두콩 / 쥐눈이콩 / 청태 / 팥 / 호랑이콩 / 하얀미리 등	품목구분	품목상세	면적(m ²)	비고	* 지급품목면적	두류	두류-기타두류(직접입력)	서리태	6,185.00 m ²
구분 (예시)	백태콩나물콩 재배 확인 가능 (증빙 서류 불요)	백태콩나물콩 재배 확인 곤란 (증빙 서류 제출)	백태콩나물 콩 외 (신청 불가)																
기타 (직접입력) 입력 값	논콩-백태 / 나물콩 / 대황2호 / 대일 / 대산 / 매주콩(선종) / 장풍 / 선유2호 / 콩나물 콩 / 콩(원콩) / 대광 / 풍산 / 백태콩 / 매주콩 등	중자용 / 논콩 / 콩 / 검은콩 / 매주콩 / 기타두류 / 두류 / 콩 / 두부 / 매주콩 등 / 백태(?) / 콩, 팥 / 콩, 참깨 / 선콩 / 일반콩 / 조건부 적합, 새바람 등	검은콩 / 서리태 / 서목태 / 면태 / 밤콩 / 물콩 / 청자 5호 / 세움콩 / 선비콩 / 세움콩 / 약콩 / 울티라콩 / 울콩 / 소청자 / 작두콩 / 쥐눈이콩 / 청태 / 팥 / 호랑이콩 / 하얀미리 등																
품목구분	품목상세	면적(m ²)	비고																
* 지급품목면적	두류	두류-기타두류(직접입력)	서리태	6,185.00 m ²															
	<p><u>“신설”</u></p> <p>⑦ 이모작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, 동계 밀·조사료와 하계 두류·가루쌀을 같은 농지에서 재배한 경우 하계직불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</p>	<p>⑥ <u>수급조절용벼는 정부지원 RPC와 출하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, 가공용·초다수성 품종을 제외한 밥쌀용 품종에 한함</u></p> <p>⑦ 이모작 인센티브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며, 동계 밀·조사료와 하계 두류·가루쌀·<u>조사료(알팔파 포함)</u>를 같은 농지에서 재배한 경우 하계직불금에 더하여 추가 지급</p>																	
<p>지급단가 p 18</p>	<p><u>“신설”</u></p>	<p>△ <u>수급조절용벼는 계약물량 달성 면적에 비례하여 전락작물직불금 지급</u> <u>* (예시) 계약물량 5t, 참여면적 1ha인 농가가 계약물량의 50%(2.5t)만 출하 시 계약물량 달성 면적은 0.5ha → 직불금은 500만원/ha × 0.5ha = 250만원 지급</u></p>																	

항목	'25년	'26년				
<p>신청서류 p 29, 43</p>	<p>④ 신청시 제출서류 *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지급대상자임을 조사·확인을 위한 증빙서류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"신설"</u></p>	<p>④ 신청시 제출서류 * 그 밖의 등록신청 담당 공무원이 지급대상자임을 조사·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** <u>두류 중 백태, 콩나물콩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'직불지침개편안 동의서' 서식 제출 및 '접수증(백태, 콩나물콩)' 서식 작성·교부</u> *** <u>수급조절용벼 통합서약서는 신청 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전략작물직불금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</u></p>				
<p>등록신청시 유의사항 p 30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"신설"</u></p>	<p>④ 신청·접수 시간 확인 및 기록 철저 - <u>품목별 신청가능 면적 초과 접수시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, 접수증에 실제 접수시간 기록</u>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1413 727 2007 775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접수시간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담당자 확인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 00: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인)</td> </tr> </table>	접수시간	담당자 확인	20 00:00	(인)
접수시간	담당자 확인					
20 00:00	(인)					
<p>신청 시 제출서류 p 31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"신설"</u></p>	<p>4. 수급조절용벼 통합서약서 ① 신청인이 개인정보 및 제3자제공·활용, 농업인 준수사항, 직불금 지급 기준에 동의한다는 서류 * (서류확인) 수급조절용벼 통합서약서(별지 14호)</p>				
<p>이행점검 p 38</p>	<p>△ (점검기간) (동계작물) 4.1~6. 30.까지, (하계작물) 7.1.~10. 31.까지(지자체 통보기간 포함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"신설"</u></p> <p>△ (결과통보) 농관원은 '부적합'을 확인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(별지11호)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</p>	<p>△ (점검기간) (동계작물) 4.1~6. 30.까지, (하계작물) 7.1.~10. 31.까지 * <u>지자체 점검 시, 정상적으로 재배 관리된 전략작물이 기상요인으로 인해 수확이 지연되어 1월중 수확가능한 경우에는 직불금을 선지급한 후 수확을 점검하여 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하여야 함</u></p> <p>△ (결과통보) 농관원은 '부적합'을 확인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농업인에게 서면(별지11호) 등으로 점검결과를 통보</p>				

항목	'25년	'26년
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"신설"</u></p> <p>△ (이의신청)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를 받은 10일 이내 서면(별지12호)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</p> <p>*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서면(별지 13호)으로 농업인에게 통보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"신설"</u></p> <p>△ (결과보고)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(동계 7.10. 하계 11.10.까지)</p>	<p>* <u>농가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대면 고지 후 이행점검시스템에 서명을 받거나, 전화로 고지하여 녹취하고 부적합 사유 등을 시스템에 등록(이 경우 반드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고지해야 함)</u></p> <p>△ (이의신청) 이행점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농업인은 결과통보(서면, 대면고지, 전화녹취 포함)를 받은 10일 이내 서면(별지12호)으로 관할 농관원으로 재조사 요청</p> <p>* 이의신청을 받은 농관원 사무소는 <u>부적합 사유가 "11월 이후 수확 예정"인 경우를 제외하고는</u> 즉시 재조사 후 그 결과를 서면(별지13호)으로 농업인에게 통보</p> <p>** <u>11월 이후 수확예정인 경우로 지자체에서 점검할 대상에 대하여는 농관원이 목록을 농식품부에 제출하여 지자체에서 수확을 점검</u></p> <p>△ (결과보고) 농관원은 이행점검 결과를 농식품부로 보고(동계 7.31. 하계 <u>11.30.까지</u>)</p>
<p>신청서류 p 46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[별지 제4호 서식 첨부물] 문구 수정</u></p> <p>⑨ 지급대상 농지(필지기준) 중 "농지의 형상"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(폐경)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(기준에 직불금 수령시 부정수급으로 조치됨)</p>	<p>⑨ 지급대상 농지(필지기준) 중 "농지의 형상"이 유지되지 아니하는 면적(폐경, 생산·개량·부속시설)은 지급대상 면적에서 제외</p>